

#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58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
제출자 : 달성군주



## 1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,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군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

## 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3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(개정)

## 3. 주요내용

- 사업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
- 사업기간 : 2025. 2. ~ 자금소진 시
- 사업규모 : 150억 원(출연금 10억 원의 15배)
- 사업비 : 10억 원(군비/출연금)
- 사업내용 : 기술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
  - 특례보증 : 기술보증 100%, 보증료 0.2%p 감면
- 보증한도 : 기업당 최대 5억 원
- 특례기한 : 최대 3년
- 융자금리 : 기업과 은행 간 약정 금리
- 추진방법 : 기술보증기금 출연

#### 4. 향후 계획

- 2024. 11. : 2025년도 본예산 2차 정례회 상정
- 2024. 12. : 달성군-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
- 2025. 2. : 사업 추진

#### 5. 출연심의 요구서 : 붙임1

#### 6. 출연기관 현황 : 붙임2

**붙임 1**

# 출연 심의요구서

출 연 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관 명 : 기술보증기금</li> <li>○ 이 사 장 : 김 중 호</li> <li>○ 일반현황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</li> </ul>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 예정금액 : 1,000백만 원(군비)</li> <li>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업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예산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5 요구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4 요구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재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월 ~ 자금소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원으로 조성</p>	구 분	사업기간	예산액	2025 요구액	2024 요구액	합 계	-	1,000	1,000	0	기본재산	2월 ~ 자금소진시	1,000	1,000	0
구 분	사업기간	예산액	2025 요구액	2024 요구액												
합 계	-	1,000	1,000	0												
기본재산	2월 ~ 자금소진시	1,000	1,000	0												
출 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,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군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</li> </ul>															
근 거 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</li> <li>○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3조</li> <li>○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</li> </ul>															
사 업 부 서 의 견 (총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 특례보증과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1,000백만 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														

붙임 2

## 출연기관 현황

기관명	기술보증기금		전화번호 : 1544-1120							
			홈페이지 : www.kibo.or.kr							
소재지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33									
설립근거	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									
설립일자	1989.04.01									
조직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조직) 본부(11부 7실), 영업점(지역본부 8개, 지점 64개, 중앙기술평가원 1개, 기술혁신센터 8개,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1개 등 88개)</li> <li>○ (인력) 1,432명(임원 7명, 직원 1,425명)</li> </ul>									
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술보증) 기술기업이 창업,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 등에서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</li> <li>○ (기술평가)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다양한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</li> <li>○ (보증연계투자)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·지방기업 중심으로 주식, 사채(CB, BW) 등 인수를 통해 직접금융 지원</li> <li>○ (구상권관리) 보증부실화로 인한 채권보전조치 및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</li> <li>○ (기술이전·보호) 공공연구소 등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및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신탁, 임치 등 보호시스템 제공</li> </ul>									
보증현황 (건, 억원)	총보증공급(누적, '23.12.31.)		보증잔액('23.12.31.)		2023년 보증공급('23.12.31.)			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			
	2,540,086	4,729,237	138,429	279,176	136,299	284,386				
기본재산 (억원)	총 기본재산 ('23.12.31.)	설립당시 기본재산				증감 기본재산				'23년 자치단체 출연금
		소계	시	정부	기타	소계	시	구군청	정부	
	35,341	217	-	-	217	35,124	-	-	-	35,124
재무현황 (억원)	자산('23.12.31.)			부채('23.12.31.)			자본('23.12.31.)			
	계	유동자산	비유동자산	계	유동부채	비유동부채				
	49,441	40,245	9,196	14,100	2,003	12,097	35,341			

**참 고**

**관계법령**

**□ 지방재정법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**□ 기술보증기금법**

제13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2. 정부의 출연금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(年率)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20., 2023. 1. 3.>

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